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공제제도

# 제과점에서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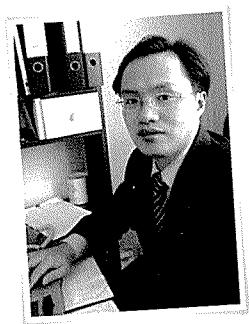
2005년 1월부터 5천 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제도인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다.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금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과점에서 추가 납세의 위험 부담이 예견된다. 제과점에서는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글\_정동현 세무사



**현금영수증 제도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모, 자녀(직계 존·비속)가 사용한 현금 지출까지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는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렇듯 근로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주된 목적은 탈세가 빈번한 현금 매출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과세 정도를 표준화하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제과점에서는 매출이 대부분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 제과점 등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 Tax Accountant 정동현

정동현세무사사무소 대표인 정동현 세무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각종 세무 및 경영자문 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으로 그는 현재 치과정보지 〈덴포리안〉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지 〈전국부동산뉴스〉에 세무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3년 11월호부터 〈베이카리〉에 제과점 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과 각종 절세 정보를 연재하고 있다.

###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음식점, 숙박업소, 유통업소 지출 비용

물품 구입비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서비스 비용 자동차 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기축병원, 이·미용원, 법률회계 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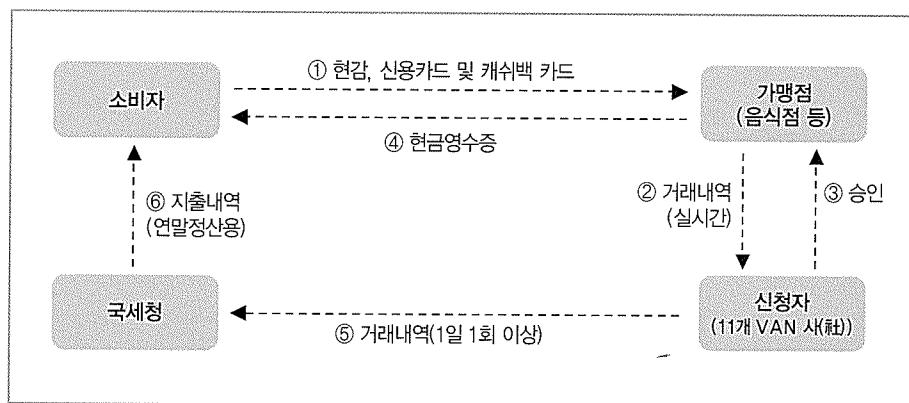
※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와 같다.

### 2. 근로소득자의 절세 혜택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했을 때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 금액의 20%를 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3.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정보가 국세청에 매일 통보되고 세금 관리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업소나 음식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VAN(Value-Added Network :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업소를 늘리기 위해 무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주고 VAN 수수료 또한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또한 현금 거래 내역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음식점, 학원 등 8개 분야 사업자들은 200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혜택과 함께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2005년 세제 개편 안에 관련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소개된 8개 유형별 사업자 중 중소사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8개 유형의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금액 계산 특례적용 + 부가세 감면 + 세무조사 면제' 또는 '소득 · 법인 · 부가세 납세 감면 + 세무 조사 면제 + 기장세액 공제 확대' 등 두 가지 세제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 감면율은 1년 차 100%, 2년 차 50% 등 총 150%가 적용된다.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도산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 원 미만, 음식 · 숙박 · 제조업은 3억 원 미만, 의사 · 변호사 · 부동산 임대업은 1억5천만 원 미만이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소득금액은 100%)이상 돼야 하고 복식기장 사업자 또는 경비지출 중 50% 이상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간편장부 사업자여야 한다.

### 4. 제과점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은 탈세가 심한 현금매출 업종 자영업자들의 과세 정도를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과업과 같이 현금매출의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납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과점 업주들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매장의 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세제 지원 받을 수 있는 8개 사업 분야

- 1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을 설치하는 중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 3 입찰 구매 전산시스템(B2B)을 구축한 건설업계, G2B 및 원재료 투입액 등이 전액 노출되는 제조업체
- 4 프랜차이즈 업소, 주유소 등 POS 시스템 설치 업소 및 임차 유통업체
- 5 TV 흡수기 등 전사상거래 사업자
- 6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 7 우유, 신문보급소 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 사업자
- 8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